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도모
- 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
- 다.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
- 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개선사업으로 청소물량이 70%이상 감소함에 따라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7.3% 인상(안 별표 1)
- 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2014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정화조 수수료 18.8%, 분뇨 수수료 9.2% 인상(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2013. 3. 14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신·구대비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고지분부터,

제27조 관련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수거 및 청소분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비고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170	190	
	21 ~ 30㎥ (2단계)	220	240	
	31㎥ 이상 (3단계)	490	530	
일반용	0 ~ 100㎥ (1단계)	310	340	
	101 ~ 300㎥ (2단계)	380	410	
	301 ~ 1,000㎥ (3단계)	470	510	
	1,001 ~ 2,000㎥ (4단계)	590	630	
	2,001㎥ 이상 (5단계)	700	750	
욕탕용	0 ~ 1,000㎥ (1단계)	470	520	
	1,001 ~ 1,500㎥ (2단계)	550	610	
	1,501 ~ 2,000㎥ (3단계)	640	710	
	2,001㎥ 이상 (4단계)	730	810	
산업용	㎥ 당	290	31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비고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18ℓ	226	208	18	236	218	18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2.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비고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기본 0.75m³	11,445	10,695	750	12,461	11,711	750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초과 0.1m³당	1,236	1,136	100	1,344	1,244	100	

별표 신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m]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금(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m³ (1단계)	150	가정용	0 ~ 20m³ (1단계)	170	190
	21 ~ 30m³ (2단계)	200		21 ~ 30m³ (2단계)	220	240
	31m³ 이상 (3단계)	450		31m³ 이상 (3단계)	490	53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28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310	340
	101 ~ 300m³ (2단계)	350		101 ~ 300m³ (2단계)	380	410
	301 ~ 1,000m³ (3단계)	430		301 ~ 1,000m³ (3단계)	470	510
	1,001 ~ 2,000m³ (4단계)	550		1,001 ~ 2,000m³ (4단계)	590	630
	2,001m³ 이상 (5단계)	650		2,001m³ 이상 (5단계)	700	750
욕탕용	0 ~ 1,000m³ (1단계)	420	욕탕용	0 ~ 1,000m³ (1단계)	470	520
	1,001 ~ 1,500m³ (2단계)	490		1,001 ~ 1,500m³ (2단계)	550	610
	1,501 ~ 2,000m³ (3단계)	570		1,501 ~ 2,000m³ (3단계)	640	710
	2,001m³ 이상 (4단계)	650		2,001m³ 이상 (4단계)	730	810
산업용	m³당	270	산업용	m³당	290	31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현행과 같음			

[별표 6]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제27조제1항)

(단위: 원)

구분	용량 (ℓ)	계	수수료	사용료
구미시	18ℓ	216	198	18

비고: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용량(㎡)	계	수수료	사용료
기 본	0.75	10,490	9,740	750
초 과	매0.1㎡당	1,135	1,035	100

비고: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18ℓ	226	208	18	236	218	18

비고: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2.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기본 0.75㎡	11,445	10,695	750	12,461	11,711	750
초과 0.1㎡당	1,236	1,136	100	1,344	1,244	100

비고: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② ~ ③ 생략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⑤ 생략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 2.29>